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안

김영선 대표 세무사

국내 금융상품 과세 체계

※ 국내 금융상품 과세체계

※ 개인기준

구분	과세대상	과세방법	비고
주식	국내 소액주주 상장주식 외 대주주, 비상장, 해외주식	자본이득 양도소득 분배금 배당소득	
채권	국내외 해외채권	자본이득 비과세 쿠폰 이자소득	
수익증권	국내 펀드, ETF	자본이득 배당소득 분배금 배당소득	상장 ETF 자본이득 비과세
파생결합증권	ELS, ETN	자본이득 배당소득	상장 ETN 자본이득 비과세
파생상품	장내장외 파생	자본이득 양도소득	개별주식선물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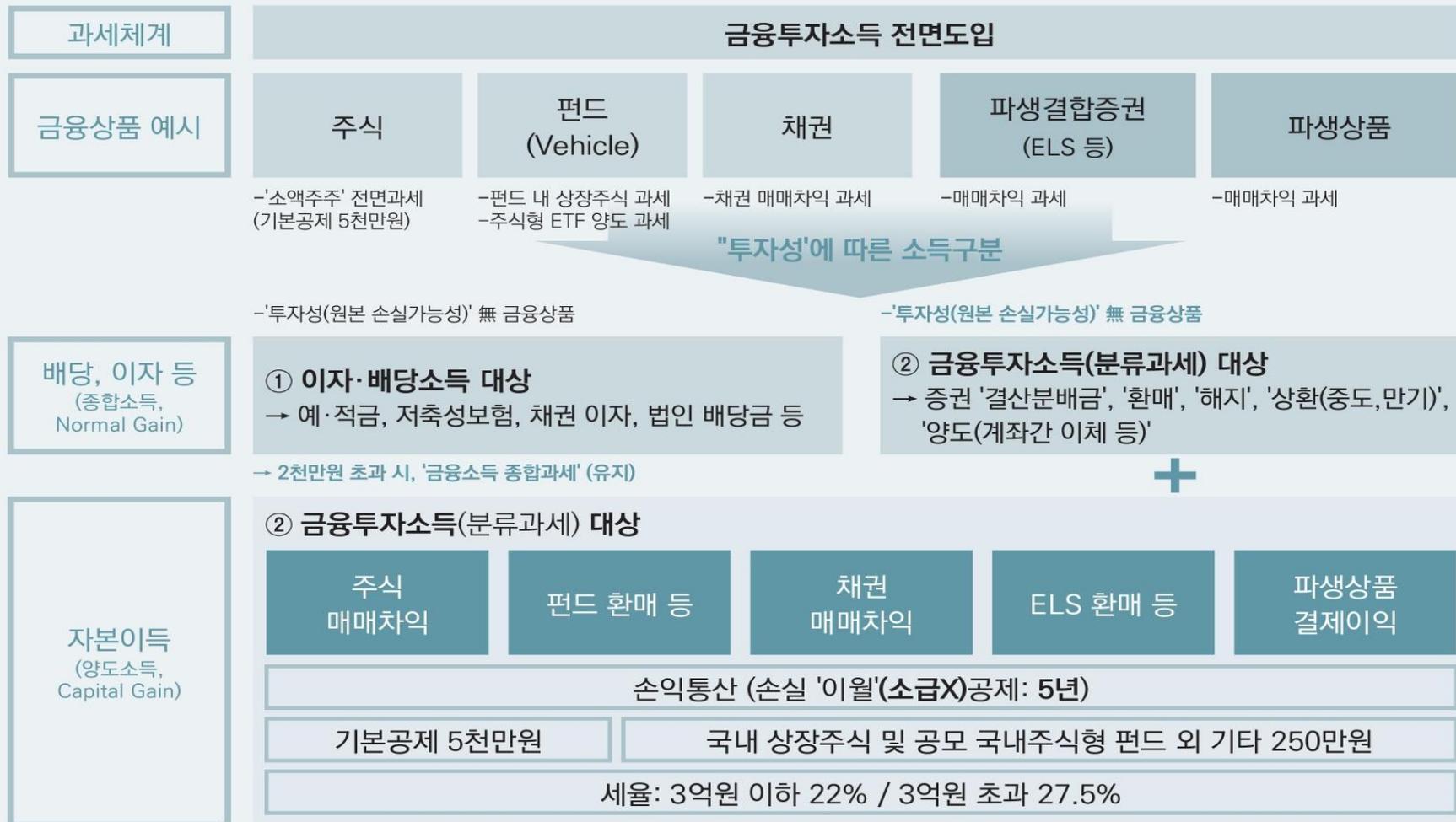
주요국 자본이득 과세 비교

※ 주요국 자본이득 과세비교

구분	미국	일본	영국
자본소득범위	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	주식, 채권등 양도차익 이자배당소득	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
과세방식	종합과세 : 1년미만 분리과세 : 1년초과	분류과세 : 양도소득	분류과세 : 양도소득
손익통산	과세방식별 통산	전부 손익통산	전부 손익통산
이월과세	기간제한없음	3년간 이월공제	기간제한없음
세율	종합과세 : 0~20% 분리과세 : 10~37%	≒ 20%	소득별 10~20%
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 예외적 원천징수 가능	신고납부

핵심요약

●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세부내용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 금융상품 all 과세 & 손익통산 可

구분	주요내용														
1) 과세범위 (6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투자계약증권 매매차익,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등) 이익,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거래이익 														
2) 소득금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 양도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주식 취득가액 : 계좌별 & "이동평균법"(FIFO X) / 의제취득가액(소액주주 限) 채권 : (양도가액 - 보유기간이자) - 필요경비 (개별법) 펀드 = (1좌당 양도소득금액) - 보수 및 수수료 														
3)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기본공제*1) - 이월결손금(5년) *1) (1그룹) :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천만원) (2그룹) : 위 (1그룹) 외 금융상품 (25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569 992 1555 1120"> <thead> <tr> <th colspan="2">제1그룹</th> <th colspan="5">제2그룹</th> </tr> </thead> <tbody> <tr> <td>국내 상장주식</td> <td>공모 국내 주식형펀드</td> <td>국내 비상장주식</td> <td>해외 주식</td> <td>공모국내펀드外 (사모 등)</td> <td>파생결합 증권</td> <td>파생 상품</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율 : 22%, 27.5% (3억원 초과) 	제1그룹		제2그룹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	공모국내펀드外 (사모 등)	파생결합 증권	파생 상품
제1그룹		제2그룹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	공모국내펀드外 (사모 등)	파생결합 증권	파생 상품									
4)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금융회사) : 반기별 22% 원천징수 확정신고 : 익년 5월 말 까지 자진신고·납부 														

절세방안 변경 필요

AS-IS

Point!

상품 기준 과세

- ① 비과세 섹터 집중투자
ex. 상장주식 장내매매, 채권 매매, 공모주식형 펀드 등
- ② (人別)분산투자 Needs 少



TO-BE

Point!

人別 '분산투자'

- ① 위탁계좌 : 年 5,250만원 (人)
- ② 중개형 ISA : 투자액 1억원 비과세 + 기타 세제혜택 (人)
- ③ '현금증여'를 통한 인별투자 必
→ 年 비과세 한도 확보 & 자금출처조사

(참고)
세제혜택 비교

	위탁계좌 기본공제	중개형 ISA 국내상장주식	중개형 ISA 국내상장주식 외
1인 단독투자	5,250만원	투자액 1억원 비과세	비과세 200만원+9.9%
4인 가족투자	2억 1천만원	투자액 4억원 비과세	비과세 800만원 +9.9%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질의

Q1.

기존 과세대상이 아니던 상장주식 및 채권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펀드, 미열거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도 전부 과세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기존 상품별 구분과세에서 펀드 간 통산, 상품 간 통산이 가능하게 하면서 모든 금융상품을 ‘전면과세’ 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입니다.
- 세법상 명문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Cf. ISA, 비과세종합저축, 공모부동산펀드 등)
-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절세상품 가입 不可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질의

Q2.

‘금융소득’(이자or배당),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 ‘투자성’ (원본손실가능성)에 따라 구분
- 즉, 예금, 채권이자, 배당금 등은 ‘금융투자소득’ 이 아닌 기존 ‘금융소득’ 으로서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정산과세’
- 다만, 금융투자소득범위로 규정한 주식·채권 매매차익, 펀드, ELS 등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으로 구분되어 별도 과세 됩니다.

Ⅲ.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절세방안

주요 사례

Case 1. '23년 귀속 연간 금투소득 : 국내상장 1억, 기타 2억원

구분	제 1그룹		제 2그룹				합계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	기타 펀드	파생결합 증권	
소득금액	+1억원	-	-	-	-	2억원	3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		250만원				5,250만원
공제후 소득금액	5천만원		197,500,000				2.475억원
과세표준			247,500,000				247,500,000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54,450,000				54,450,000

Case 2. '23년 귀속 연간 금투소득 : 국내상장 5천만원, 기타 3억원

구분	제 1그룹		제 2그룹				합계
	국내 상장주식	국내상장 주식형펀드)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	기타 펀드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5천만원	-	-	3.5억원			3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		250만원				5,250만원
공제후 소득금액	△5천만원		347,500,000				297,500,000
과세표준			297,500,000				297,500,000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65,450,000				65,450,000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질의

Q3.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세 등은 언제까지 유지 되나요?

- 법 시행 전인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각 상품별 현재와 같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즉, 상장주식인 경우 시가총액 10억 기준으로 과세가 22년말까지 유지되며 그 외 해외주식, 파생상품, 비상장 주식 양도세 등도 자진해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질의

Q4.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5년'이 적용되는데, 과거 손실도 반영할 수 있나요?

-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월과세'란 특정 과세연도에 손실이 '장래'를 향하여 이월되면서 공제되는 것을 말하며, 과거의 손실을 공제('소급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 즉, 23년 투자이익, 24년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24년 확정 손실은 25년 이후 과세연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23년 손익 : 과세종료)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질의

Q5.

‘금융투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이미 원천징수된 15.4%와 본인의 유효세율과 차액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 합니다. (익년 5월)
-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3억원 초과 시, 이미 원천징수된 22%와 27.5%의 차액분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익년 5월 자진신고·납부)
-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며,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핵심 절세방안

Point 1

인별 비과세 투자한도 확보

핵심내용

- ① 만19세 이상 증여세 면세점 : 5천만원 → ISA 2천(연간) + 위탁 3천
- ② 미성년자 증여세 면세점 : 2천만원 → (일반)위탁계좌 활용 & 성년 ISA 가입·전환 + 3천만원 추가증여
- ③ 적극적 증여신고

핵심 절세방안

Point 2

ISA 중개형 계좌 필수 가입

※편입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등

핵심내용

- ① 만19세 이상, 1인 1계좌(全 금융기관), **연 2천만원**(최대1억), **3년 이상**(연장可)
- ② ISA 계좌 內 **손익통산** → **200만원 초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③ ISA 계좌 內 국내 상장주식(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K-OTC) **비과세**(‘23.이후 해지 분)



주식 배당금 비과세+분리과세

주식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

구분	일반계좌 vs ISA계좌	비고
① 종합소득세 (現)	15.4% vs '저율과세'	건강보험료 우려 시, 국내 상장주식 비중 ↑
② 금융투자소득세 ('23~)	22%(27.5%) vs '저율과세'	국내상장주식 비과세

참고

Point | (韓) 자본이득과세&종합과세병행 → 상속세율 실효세율 인하 방안 必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명목최대상속세율	60%	40	30	55
과세방식	유산과세	유산과세	유산취득	유산취득
실효세율	35.1%	23.8%	21.5%	12.5%
기본상속공제	10억	\$1,170만	¥	¥3,600만
가업승계제도활용	-	-	○	○ (특례사업승계제도)
자본이득과세	과세(예정)	과세	과세	과세
자본이득최고세율	25%	37%	25%	20%

감사합니다